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057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병주 · 허성무 · 황명선  
김태선 · 채현일 · 박희승  
박지혜 · 정을호 · 윤후덕  
윤준병 · 이언주 · 한준호  
조정식 · 박 정 · 박찬대  
양문석 의원(16인)

## 제안이유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

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유휴지”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할 부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 및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해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

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군유휴지등에서의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교육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며, 고용안정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유휴지(軍遊休地)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
2. “군유휴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를 말한다.
3.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유휴지는 제외한다.
4.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유희지 및 군유희지주변지역(이하 “군유희지등”이라 한다)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유희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유희지등을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  
의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군유희지등의 발  
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유희지등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유희지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6.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7.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7조에 따른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①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도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군유희지등발전심의회) ① 군유희지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유희지등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유희지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실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군유희지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5.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정성 등에 관한 검토
  6. 군유희지등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 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사업의 시행

제8조(사업시행자) ①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사업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3.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4. 해당 사업이 다른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5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

· 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및 허가
14.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다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

축허가등의 동의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2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  
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3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  
서의 행위허가
3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변  
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9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9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4조(군유휴지의 처분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의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이하 “보호구역 해제”라 한다)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해제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군유휴지의 징발 해제 및 매각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 해제, 양여, 매각, 사용허가, 대부 등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한 경우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후 토지 이용 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가 군유휴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공용·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유휴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⑨ 국가가 군유휴지를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5조(군유휴지의 규제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군유휴지에 대하여 징발 해제 및 보호구역 해

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군유흥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군유흥지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군유흥지 안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유흥지 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 가. 도로·주차장·교량
  - 나. 공원·녹지
  - 다. 수도·공동구(共同溝)
  - 라. 공공청사·문화시설
  - 마. 교육시설·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 하고자 하는 토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희지 안의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매각하거나, 5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대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군유희지 안의 국유지를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게 대부하는 군유 휴지 안의 국유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군유희지등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우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군유희지등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사업
  2. 군유희지등의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군유희지등의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사업
  4. 군유희지등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
  5. 군유희지등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6. 군유희지등의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사업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군유휴지등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휴지등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 군유휴지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③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군유휴지등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해제물량을 별도로 할당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

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취소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다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군유휴지등에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

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군유휴지등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군유휴지등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고용안정사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유휴지등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와 군유희지등에 입주한 기업은 해당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가공식품 및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희지등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유희지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희지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희지등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유희지등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군유희지등의 밖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군유희지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유휴지등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등

제32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허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